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2일 이전인 국제출원은 종전과 같이 30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우선일로부터 2년 6월에 해당하는 날이 2006년 3월 3일 이후인 국제출원은 개정된 특허법에 따라 31개월 이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을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인 변경 및 발명자 변경은 가능합니까?

**Answer**

- 국제특허출원의 우리나라 국내단계진입 시 출원인 및 발명자는 국제단계에서 인정된 “국제공개 팜플렛” 또는 “변경기록 통지서”의 출원인 정보 및 발명자 정보와 일치하여야 하며, 정당한 권리 승계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제출 시 첨부해서 제출하거나 국내단계 진입 후 출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정등록 전까지 출원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발명자는 특허여부 결정전까지 서지사항보정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특허를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번역문 및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 국제특허를 외국어가 아닌 국어로 출원했을 경우 국내단계 진입방법은 번역문의 제출은 생략하고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및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Question**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기한까지 “서류 제출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일이 기준일이 됩니다.